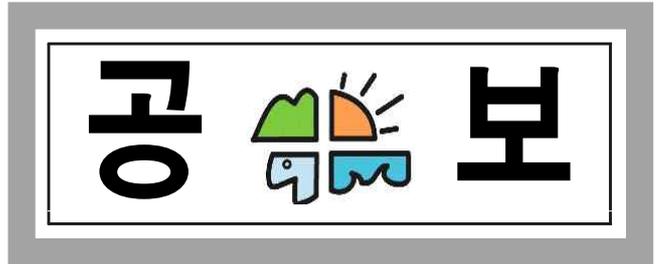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792호 2013년 8월 20일(화)

## 공 고

-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 속초시 공고 제2013 — 531호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속 초 시 장

#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가. '10. 6. 8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용품제조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나. 그동안 고시기준에 의거 운영해 오던 세부적 허가요건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 세부 허가요건 >

- ① 판매사업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주차면적 30㎡이상 확보
  - 사무실은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
  - 원활한 가스공급과 수급관리를 위해 전산관리 의무화

②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 유지

나. 사업개시전 양도·양수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3. 자치법규안 : 붙임

### 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희망일자리추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보내실 곳

- 주 소 : 우 217-701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에너지관리팀)
- 전 화 : 033-639-2375
- F A X : 033-639-246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희망일자리추진과 주무관 서영애(033-639-23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등 그 밖의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세부허가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개시 전 양도·양수금지)** 허가를 득한 후 사업개시 이전에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 이민, 신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액화석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요건**(제3조 관련)

구 분	허 가 요 건
판매사업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1. 주차면적 30㎡이상 확보해야 한다. 2. 사무실은 허가받은 용도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3. 원활한 가스공급과 수급관리를 위해 전산화관리를 의무화 한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 <sup>1)</sup> 으로부터 보호시설 <sup>2)</sup> 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가목 1)의 (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사업소경계와의 거리의 2배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의 외면이란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을 뜻함.

2) 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을 제외함.